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삼척시	심의일자	2023-02-06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삼척블루파워(주)	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남양동		
	지번 29 - 3	관련지번 28	
	대지면적 911258 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 전원개발사업구역,소하천구역,소하천예정지,도시지역,자연녹지지역,일반공업지역,계획관리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3595.91 m ²	건폐율 0.39 %	층수 지하: 0 층/지상: 2 층
	주용도 발전시설	구조 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 14.56 m	용적률 0.54 %	연면적 합계 4904.06 m ²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종합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용한 구조설계기준이 최근의 기준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까? ○ 사용된 구조용 강재를 보면 일반구조용 압연강재(SS275), 건축구조용 압연강재(SHN355), 용접구조용 압연강재(SM355)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. 3가지 종류의 강재를 사용함으로 인한 시공상에서 혼란은 없겠는지요? ○ 지붕의 골조를 보면 Pin 접합과 강접이 혼용되어 있습니다. 지붕 골조의 구조설계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. ○ 일부 RC보의 경우 철근 개수에 비하여 보의 폭이 부족해 보입니다. 검토 바랍니다. ○ 30m 경간의 Girder(BH 1200X300X30X45)에 대한 해석 모델링 과정과 해석결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. ○ 30m 경간의 Girder(BH 1200X300X30X45)와 기둥의 접합부 상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 ○ 구조 심의대상 설명 자료 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면 목록표와 제시 자료의 상이 - 스패 30미터의 부재 디테일 제시 부족 ○ 해당 구조부재의 내화성능 자료 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화성능 확보방안 부족 - 화재시 피난계획 등 화재안전성능 보완 필요 ○ 시공제작 디테일 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스팬 부재 제작 및 시공계획 미비 - 앵커볼트 현장 시공 상세 계획 미비 ○ 슬래브에 정착되는 BP1A(2EA)의 ANCHOR ELEVATION 추가 요망 (정착길이 부족함) ○ 중량물 창고 내부로 제품의 적재 및 이동 시 중차량 진입 및 작업 공간의 확인이 필요하며, 중량물 적재 및 이동(차량하중+적재하중)에 대한 S.O.G의 안정성을 확인 바랍니다. ○ 질량 참여율 확인 바랍니다. ○ 보정계수 산정에 대한 근거를 첨부 바랍니다. ○ 독립기초 상부근을 확인 바랍니다. (배근이유는?) (구조계산서 D13,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2호서식]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종합)분야	구조도면 D25) ○ PIT층의 MF1을 기초부재로 배근 시 두께 200적용을 검토 바랍니다. ○ BH1200 부재의 처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 바랍니다. ○ 철골 구조입면도-1에서 H444, H394 부재의 시공방향에 대하여 확인 바랍니다. ○ SHN과 SS, SM 적용을 부재크기로 구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. (예를 들어 기둥부재의 H444와 입면에 사용된 H444의 구분)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부결 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	